

# 私學機關의 財務會計制度의 實態에 관한 調查研究



尹 桂 慶  
(서울大 經營大 助教授)

## 1. 序 言

本 調查研究는 私學機關의 財務會計制度를 改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私學機關의 財務會計制度의 實態를 조사한 것이다. 私學機關의 會計는 對內的으로는 學校法人의 財務計劃은 물론 그 執行結果를 測定할 수 있는 手段이며, 對外的으로는 國家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學校運營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私學機關의 財務會計制度實態는 本論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上述한 會計任務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本 調查研究는 우리나라 私學機關의 會計制度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六個大學校를 訪問하고 面談하여 設問書를 설계하고 全國의 大學(校)과 專門大學에 발송하였다. 本 調查研究는 文教部의 적극적인고 긴밀한 協調 아래 수행되었는 바, 文教部 當局者와 設問書 및 訪問 調查에 적극 협조해 주신 學校實務者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本 調查研究의 결과는 私學機關의 財務會計制度가 社會的으로 公共性和 信賴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을 改正하는데 利用되었다. 本 調查研究는 우리나라 私學의 財務會計制度의 實態를 최초로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는데 意義를 찾아볼 수 있다.

## 2. 設問書內容分析 및 評價

### 1. 設問分析의 概要

本 研究팀은 2月 20日을 전후로 調查對象 學校와 法人에 設問書를 發送했다. 발송처의 숫자는 <表 1>과 같다. (設問書의 內容은 本稿 末尾에 수록하였음)

<表 1> 발 송 처 수

	학 교	법 인
총 합 대 학	20個	20個
단 과 대 학	57個	57個
전 문 대 학	91個	91個
計	168個	168個

本 研究팀은 이 質問書의 回收를 3月末까지 마감했는데 回收된 結果는 <表 2>와 같다.

<表 2> 回收 設問數

	학 교	법 인	비 고*
총 합 대 학	11個	8個	7個
단 과 대 학	30個	20個	18個
전 문 대 학	38個	25個	20個
計	79個	53個	45個

\* 學校와 法人이 각각 回答한 경우.

\* 本 調查研究는 本人의 責任下에 宋光憲(梨花女大 監査室長), 鄭基善(公認會計士)氏와 共同研究하였음.

전체적으로 학교와 법인에 발송한 336개의 質問書 중에서 132개만이 回信되었다. 이 중에서 학교와 법인이 모두 回答한 곳은 45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內容을 살펴 본 결과 回答內容이 學校와 法人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에서만 質問書를 回答한 경우는 서신을 첨부해서 학교와 법인의 內容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문을 하나만 보낸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따라서 回答의 分析에 학교와 법인을 분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某大學의 경우는 법인과 학교가 독립적으로 설문에 응해 內容상으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인 곳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學校를 原則으로 하고, 法人의 內容은 差異가 생긴 內容을 참조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각할 때 학교와 法人의 설문회수는 전체로 87개(132개-45개)에 달하는데, 이 중 2개 大學의 경우처럼 회수된 질문서가 본 研究팀의 발송질문 양식과 차이가 있어서 分類上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였는데, 이렇게 볼 때 전체회수율은 50%(85/168)이다. 50%의 회수율이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된다 하더라도 私學機關의 會計實態를 최초로 분석하고 全數調査에서 50%의 회수율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분석을 하는 데서 內容上的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종합대학과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분류하고 각 학교를 規模別로 大·中·小로 나누었다. 이 分類基準은 총예산액과 학생정원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있는데 본 質問書의 분류에서는 학생정원을 基準으로 택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예산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학생 총수에 따라 豫算이 比例하므로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表 3〉 학생규모별 학교수

	대 학		전 문 대 학	
	규 모(명)	갯 수	규 모(명)	갯 수
大	6,000 이상	11個	2,000 이상	16個
中	6,000~2,000	13個	2,000~1,000	12個
小	2,000 이하	18個	1,000 이하	15個
計		42個		43個

회수된 학교의 규모별 수와 분류기준은 〈表 3〉과 같다.

## 2. 設問書의 統計

設問書의 內容은 私學機關의 會計內容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研究陣에서 당초에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 하였다. 현행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에서 나타날 수 있는 問題를 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을 改正할 경우에 그 方向을 모색 하는데 設問分析의 目的이 있으므로 이들 문제점을 나열하여 客觀的으로 選擇하게 하고 문제점의 羅列이 不足한 경우에는 이를 記錄하게 하였다. 다음은 設問의 作成內容과 그 理由이다.

### (1) 分類基準

設問의 回收後 이를 分類하기 위하여 組織面에서 綜合大學學校와 單科大學을 區分하고, 이는 學校費의 豫算規模와 教授, 職員의 數와 비례할 것으로 推定된다.

### (2) 計定科目 體系

本 研究에 있어서 큰 問題로 지적되는 것 중에서 첫째는 計定科目의 體系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計定科目은 學校法人 및 私立大學(校) 豫算編成과 財務管理要領에 나타난 歲入, 歲出 豫算科目 및 科目解說에 의거한 것으로 私學機關에서 會計를 운용하다가 생긴 문제와 文敎部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目的에 따라 計定科目이 變化하게 됨에 따라 平面的인 分化가 이루어져 體系面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體系面에서 項, 目的 分類基準을 설정하기 위하여 大分類主義와 小分類主義를 質問하였다.

### (3) 複式簿記制度

本 研究의 基本的인 意圖는 앞으로의 學校, 法人會計를 單式簿記에서 複式簿記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學校의 豫算規模가 稅務會計上的 複式簿記 採擇基準을 능가하고 있으며 非營利法人이고 會計의 단순성을 고려한다 해도 앞으로 발전적인 會計制度運營을 위해서 複式簿記制度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簿記制度를 채택하는데 대한 反撥이 예상되므로 그 反對理由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었다.

#### (4) 豫算制度

學校·法人會計는 單式簿記의 豫算制度를 운영하여 官廳會計式으로 운영되어 왔다. 豫算制度의 效率性에 대한 이해가 적으므로 豫算制度를 改善하기 위한 문제점과 追加更正豫算의 作成理由를 알고 豫算統制의 실천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文敎部에 形式的으로 豫算을 제출하고 마는지 아니면 實行豫算書를 별도로 작성하여 統制에 이용하는지를 질문하고, 實態調査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수십개의 通帳을 번거롭게 運營하면서 資金은 非效率的으로 管理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質問을 하였다.

#### (5) 監査制度

本 研究에서의 基本方向은 監査의 強化이다. 會計管理가 복잡하게 되면 복잡할 수록 監査는 強化되어야 한다. 과거 私學機關의 經營이 문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監査가 不充分했기 때문이다. 監督廳의 監査는 人力과 技術, 時間, 豫算 등의 制約條件 때문에 法規上의 強制性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監査制度의 實態를 파악하고 研究陣이 생각한 內部監査의 強化와 아울러 外部監査인인 公認會計士監査의 運營을 위한 反應을 알기 위하여 質問하였다.

#### (6) 區分會計

學校·法人會計에서 計定科目과 함께 명백하게 정의하여야 하는 것은 會計를 어떻게 區分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거의 會計制度는 監督의 필요상 너무 細分한 느낌이 있고 이에 따라 實務執行部署는 상당히 번거롭게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改善方向을 알기 위하여 質問을 하였다. 또한 基本的으로 學校와 法人의 會計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과 收益事業會計와 學校會計를 연결시키는데 따른 문제를 설명하게 하였다.

#### (7) 財務諸表의 作成과 帳簿體系

文敎部에 보고하는 財務諸表는 豫算과 연결된 基本財産과 負債現況, 豫·決算 總括表 정도로 그 밖에는 多樣한 報告의 內容에도 불구하고 學科, 學生, 敎員, 時間講師, 職員 등의 人員現況과 圖書現況, 醫大 附屬病院과 收益業體의 法

人 寄與度 정도로서 單式簿記 體系에서의 報告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 제시할 複式簿記를 채택할 경우에 貸借對照表, 收支計算書(후에 運營計算書로 명칭을 변경함)가 작성되고, 資産의·評價를 하기 위하여 減價償却의 여부와 固定資産의 管理를 철저히 하기 위한 固定資産管理臺帳의 비치 여부를 질문하였다. 특히 固定資産의 減價償却은 國家에 따라 서로 다르고 基本方向의 설정을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固定資産의 管理面에 있어서도 學校費에 의한 固定資産의 取得이 原則的으로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變態經理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固定資産 管理가 不徹底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貸借對照表의 作成이 강조된다.

#### (8) 會計規程의 備置

會計規程의 비치는 企業에 있어서도 有名無實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企業에 있어서는 엄격한 稅法과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拘束을 받게 되지만 學校·法人會計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歷史에 따라 그 學校·法人의 會計運營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 質問하였다.

#### (9) 會計部署 組織

앞으로 개선된 會計制度의 運營을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문제점에 직접적으로 이를 담당할 會計部署의 組織과 會計擔當人員의 資質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會計制度의 복잡성은 會計部署의 내부전제조직을 완성하여야 하고 會計職員의 資質을 向上시켜야 한다. 이를 우선 대강 알기 위해서 會計職員의 學歷과 勤屬年數를 질문하고 이들의 責任關係를 質問하였다.

#### (10) 會計報告

會計情報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으로 보고 되어야 한다. 會計報告의 내용과 期間을 알기 위하여 이를 질문하였다.

#### (11) 會計年度

實態調査에서 學校會計年度를 12月 31日로 할 것인가 學年年度와 같이 2月 28日로 할 것인가 문제가 많았다. 현행과 같이 등록금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는 2月 28日이 문제가 없겠지만 收益事業과 연결할 경우에 收益事業의 회계연도가

대체로 12월 31일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연결서에 문제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실태를 알기 위해서 本 質問이 필요하다.

### 3. 設問書分析과 評價

#### (1) 計定科目의 體系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의 計定科目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問題點이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大學에서는 73%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주었으나 전문대학에서는 문제가 없는 쪽이 55%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전문대학 중에서도 規模가 큰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곳이 56%로서, 문제없다는 곳보다 많아서 대체적으로 大學쪽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쪽에서도 規模가 작을수록 문제 있다는 비율이 낮아서 이것을 볼 때 학교의 규모가 클수록 계정과목의 이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表 4> 참조)

<表 4>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의 計定科目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問題點이 있습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小) 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小) 합	전체(大)	전체(中)	전체(小)	전체(小) 합	%					
(1) 있다	7	7	11	85	11	65	29	73	9	56	5	42	433	18	45	47	59	
(2) 없다	3	3	2	15	6	35	11	27	7	44	7	58	8	67	22	55	33	41
計	10	13	17	40	16	12	12	40	80									

註) \*는 퍼센트를 나타냄.

이하의 표에 통일함.

이를 개편하는 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물음에 대해 大分類主義로 할 것을 전체의 60%가 지지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大學에서는 大分類 또는 小分類主義로 하자는 데에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문대학의 경우는 회답한 학교의 80% 가량이 대분류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대학중에서 특히 규모가 큰 학교는 大分

類主義에 대해 13%만이 응답했으며 50%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회답을 해서 규모에 따라 신축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5> 참조)

이러한 반응은 규모가 작은 大學이나 專問大學의 경우에는 豫算規模가 적어 計定科目의 細分化가 필요없는데 비해,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에는 計定科目의 細分化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 統合 혹은 細分해야 한다는 경우는 현재의 計定科目體系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이유를 묻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계정과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가지의 건의를 한 학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는 211의 用品費를 一般用品費, 什器費, 印刷費 등으로 細分하고, 400의 入試手當(401, 402, 403, 404)의 細目을 入試手當으로 410의 需用費(411, 412, 413, 414) 420, 430을 統合大分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해 주었다. 또 한 학교에서는 計定科目을 細分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그 중에서 科目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고 있다. 즉 나열된 여러 개의 계정과목 중에서 학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해도 이에 대한 실무지침만 명확하면 학교에 편리하고 추후 통계를 내는데에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質問에서 얻은 결과는 앞으로 私立學校와 法人의 豫算規模는 時間이 경과할수록 팽창할 것이 豫想되므로 현재에는 現行計定科目의 體系에 불만이 없는 大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小分類主義를 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簿記制度

학교회계에서 複式簿記制度를 택하는 데에 대

<表 5> 이를 개편하는데 건의사항이 있다면?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小) 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小) 합	전체(大)	전체(中)	전체(小)	전체(小) 합	%					
(1) 計定科目을 통합하여 大分類主義로 하여야 한다.	1	13	5	42	9	64	15	44	8	80	5	83	8	80	21	81	36	60
(2) 計定科目을 細分하여 小分類主義로 하여야 한다.	3	38	5	42	3	21	11	32	2	20	1	17	1	10	4	15	15	25
(3) 경우에 따라 다르다.	4	50	2	16	2	14	8	24	0	0	0	0	1	10	1	4	9	15
計	8	12	14	34	10	6	10	26	60									

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술형의 질문내용과 贊反을 묻는 내용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회답을 작성하는 사람이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에 응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회답에 응한 학교 중에는 이미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있는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학교도 들어나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반대한다가 48%,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찬성한다가 52%인데 반해, 전문대학의 경우는 압도적인 비율(91%)이 복식부기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表 6> 참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현행 學校會計가 單式簿記로 충분하며, 복식부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回答內容으로 생각해 볼 때 회계부서의 인원부족이나 資質不足으로 인한 것은 각각 9%, 5%로 나타나 있어 단지 새로운 부기제도에 대한 불만과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表 7> 참조)

學校會計의 특성이 收入과 對應된 支出의 빈도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一時的인 收入 이후에 계속적인 支出만이 존재하므로 單式簿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複式簿記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一見 생각되나 역시 앞으로 學生定員의 증가와 豫算規模의 增大에 따라

複式簿記가 필요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複式簿記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회계부서 人員의 資質不足을 대답한 것은 매우 적으나 <表 37>부터 <表 40>까지의 회답은 회계부서 人員의 資質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고 있어 複式簿記制度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反對理由라고 생각된다.

### (3) 豫算制度

豫算制度의 시행에 대한 질문에서 66%가 現行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에서 72%가 지지를 하고 있다. (<表 8> 참조)

예산제도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24%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간추려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산은 공개주의에 입각해서 예산요구부서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 査定한 확정액을 통보하고 當年度 예산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케 하는 것이 좋다.

- 예산을 집행할 때 統制를 철저히 해서 豫算內 집행을 확인하고, 過多要求, 浪費 등을 견제해야 한다.

- 수입대체지출(例 文敎部 補助研究費 등)은 예산액 초과집행을 인정해야 한다.

- 예산과목에 資產計定과 損益計定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複式記帳에 어려움이 있으며 병원

<表 6> 學校會計에서 複式簿記制度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合)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合)	전체합	%
(1) 이미 시행하고 있다.	6	55	3	23	4	22	13	31		
(2)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찬성한다.			4	31	5	28	9	21		
(3) 반대한다.	5	45	6	46	9	50	20	48	16	100
計	11	13	18	42	16	12	15	43	85	

<表 7> 반대하는 이유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合)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合)	전체합	%
(1) 會計部署人員의 不足	1	20		11	2	9	1	7	2	15
(2) 會計部署人員의 資質不足			1	11	1	5			2	13
(3) 單式簿記로 充分한 정도인데 複式簿記는 번거롭다.	4	80	8	100	7	78	19	86	14	93
計	5	8	9	22	15	13	16	44	66	

〈表 8〉 豫算制度의 施行은 ?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合)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合)	전체합	%
(1) 現在와 같은 형식적인 豫算制度는 不必要하다.	1	10	3	23	3	19	7	18		
(2) 豫算制度의 改善이 필요하다.	2	20	2	15	5	31	9	23	6	43
(3) 現在대로가 좋다.	7	70	8	62	8	50	23	59	8	57
計	10		13		16		39		14	
									12	
									14	
									40	
									79	

豫算制度의 改善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改善策이 필요한지를 써 주십시오.

〈表 9〉 會計年度 중 追加更正豫算은 몇 回나 편성합니까 ?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合)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合)	전체합	%
없 다			2	11	2	5	1	6		
1 ~ 2 回	11	100	13	100	15	83	39	93	15	94
3 ~ 5 回			1	6	1	2			2	17
그 以上							2	14	2	14
計	11		13		18		42		16	
									12	
									14	
									42	
									84	

회계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 많다.

· 예산과목의 지나친 세분화와 目間流用禁止는 집행상의 고충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연료비를 인건비에서 남는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해서 이를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야 한다면 지나친 형식위주의 행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운 追更豫算編成을 피하기 위해 合法을 위장한 非合理가 행해질 수 밖에 없다. 同一豫算範圍內에서의 유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報告義務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 물가 상승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액을 조정하고 입찰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私學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 第16條의 豫算編成節次 第2項에 의하면 학교예산은 當該學校長이 편성하여 當該學校法人 理事長에게 제출, 理事會의 의결을 얻어 확정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실 文教部長官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現實은 이상하다.

· 校費에서도 시설비의 補助가 可能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건의는 주로 豫算制度 자체에 대

한 문제가 아니라 豫算制度의 運用에 관한 문제다. 특히 私學에 대한 國庫補助가 없는 현실에서 豫算에 대한 감독청의 감독은 이상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다.

會計年度 중 追更은 몇 回나 합니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94%의 학교가 追更豫算을 作成하고 있으며 3回 以上하는 학교도 전문대의 경우 10% 가량이 나타나고 있다. (〈表 9〉참조)

追更의 필요성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편성의 수정이 24%가량 나타나고 기타의 이유도 22%나 된다. (〈表 10〉 참조)

기타의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계산한 인원보다 편입 또는 휴학자들이 많아 정확한 人員計上을 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1월 31일 基準人員編成)는 학교가 많았고, 그 밖에도 인건비 예산 중 殘額을 管理運營費등 기타 과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備品(例, 그랜드피아노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回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솔직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1回의 追更豫算을 作成하는 경우에는 文教部 報告用으로 최종적인 집행실적과 豫算을 맞추는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追更編成의 回數가 많은 경우는 分期別 豫算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 소 규모의 전문대학이 分期別 豫算制度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文敎部에 제출하는 예산과 별도로 統制를 위한 實行豫算書를 作成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88%의 학교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답한 학교는 大學의 경우가 17%로 전문대학의 7%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11> 참조)

만일 實行豫算書를 作成하고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의 질문 중 실행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학교에서 주로 대답했으나 작성하지 않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질문에 응한 학교가 있었다.

대학쪽에서는 58%가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50%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로는 응답한 학교의 45%가 효과가 많

을 것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 12> 참조)

이 경우에 문서상의 질문이 아니고 口頭質問인 경우에 實行豫算書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무조건 번거로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豫算制度의 운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貴校에서는 豫算擔當部署에서 會計課의 資金收支를 統合管理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83%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회답했다. (<表 13> 참조)

그러나 大規模의 大學에서도 資金收支를 통합 관리하지 않거나 豫算部署와 會計課가 豫算統制를 받는 二重統制裝置를 가지고 있지 않은 大學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大學에 비해 專問大學이 資金收支를 綜合管理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豫算擔當部署에서 會計課의 資金收支를 統合管理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否定的인 回答은 豫算制度의 運用上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表 10> 追加更正豫算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合)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合)		전체합		%
(1) 文敎部 報告用으로 修正			1	6	5	26	6	12	3	18	1	6			4	8	10	10	
(2) 物價上昇으로 再編成	5	38	9	53	4	21	18	37	7	40	10	55	8	53	25	50	43	43	
(3) 當初豫算編成의 잘못	3	24	4	24	4	21	11	22	4	24	5	28	4	27	13	26	24	24	
(4) 기 타	5	38	3	17	6	32	14	29	3	18	2	11	3	20	8	16	22	22	
計	13		17		19		49		17		18		15		50		99		

기타의 理由인 경우에는 事由를 써주십시오.

<表 11> 貴校에서는 文敎部에 제출하는 豫算과 별도로 統制를 위한 實行豫算書를 作成하고 있습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合)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合)		전체합		%
(1) 예	1	10	3	23	3	17	7	17	2	13	1	8			3	7	10	12	
(2) 아 니 오	9	90	10	77	15	83	34	83	14	87	11	92	14	100	39	93	73	88	
計	10		13		18		41		16		12		14		42		83		

<表 12> 위 물음에서 實行豫算書를 作成하고 있다면 그 効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合)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合)		전체합		%	
(1) 効果가 많다고 생각한다	1	50	3	75	3	50	7	58	1	33					2	100	2	30	10	45
(2) 上部의 指示로 하나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1	25					1	8		2	40			2	20	3	14	
(3) 効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1	17	1	8	2	67	3	60			5	50	6	27	
(4) 모르겠다.			1	50		2	33	3	26									3	14	
計	2		4		6		12		3		5		2		10		22			

(4) 監査制度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監査制度의 종류에는 90%의 대학이 内部監査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外部監査까지 하는 경우를 합하면 97% 以上이 監査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大學에서는 100%가 内部 또는 外部監査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규모로 보아 内部監査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응답은 内部監査에 대한 程度의 문제는 있으나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表 14)

참조)

그러나 内部監査者의 資質을 묻는 문항에서 内部監査者가 회계전문가인 경우는 42%에 그치고 있으며(表 15) 참조), 學校組織內에 常設監査部署가 있는 경우는 31%에 그치고 있어 70%가량이 형식적인 内部監査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學校組織圖上에 監事의 存在 때문에 이들이 特殊關係人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監査能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内部監査를

<表 13> 貴校에서는 豫算擔當部署에서 會計課의 資金收支를 統合管理하고 있습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합))		전체합		%
(1)	예	7	70	11	85	14	78	31	77	14	93	11	92	11	79	36	88	67	83	
(2)	아니오	3	30	2	15	4	22	9	23	1	7	1	8	3	21	5	12	14	17	
計		10		13		18		40		15		12		14		41		81		

<表 14> 貴校에서 채택하고 있는 監査制度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합))		전체합		%
(1)	内部監査	11	100	12	86	16	89	39	91	16	00	9	70	13	93	38	88	77	90	
(2)	外部監査			2	14	2	11	4	9			2	15			2	5	6	7	
(3)	監査를하지 않고 行政機關監査時에 같이 한다.											2	15	1	7	3	7	3	3	
計		11		14		18		43		16		13		14		43		86		

<表 15> 内部監査者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합))	전체합	%								
(1)	公認會計士등과 같은 會計專門人	4	44	6	50	6	33	16	41	8	62	3	27	5	38	16	43	32	42
(2)	非專門人	5	56	6	50	12	67	23	59	5	38	8	73	8	62	21	57	44	58
計		9		12		18		39		13		11		13		37		76	

<表 16> 學校組織內에 常設監査部署가 있습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합))		전체합		%
(1)	예	2	18	3	23	8	47	13	32	6	40	4	33	2	15	12	30	25	31	
(2)	아니오	9	82	10	77	9	53	28	68	9	60	8	67	11	85	28	70	56	69	
計		11		13		17		41		15		12		13		40		81		

<表 17> 内部監査의 種類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大(합))		전체합		%
(1)	수시감사	1	10	2	17	3	18	6	15	7	41	5	50	5	36	17	41	23	29	
(2)	정기감사	9	90	10	83	14	82	33	85	10	59	5	50	9	64	24	59	57	71	
計		10		12		17		39		17		10		14		41		80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表 16〉 참조)

內部監査의 種類는 71%가 定期監査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大學의 경우의 경우 85%가 정기감사에 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內部監査의 실시가 시기를 불문한 계속 감사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위의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表 17〉 참조)

수시감사를 하는 경우도 1년에 5회 미만인 91%로 그 대부분이고 그나마 10회 이상 수시감사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8) 참조)

그런데도 內部監査가 채택된다면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86%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表 19〉 참조)

그리고 효과가 없다는 대답이 7%이고, 모르겠다는 대답이 7%이어서 이들의 회답을 전부 내부감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감사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現在監査機構는 98%가 法人에 속한다고 회답했으며(表〈 20〉 참조), 그 費用(人件費)은 39%만이 校費에서 支給된다고 대답했으며 61%가 교비가 아닌 다른데서 支給된다고 했다. (〈表 21〉 참조)

기획관리실과 같은 統制管理機構의 설치에 대해 63%가 현재 그러한 機構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학교에서 50% 이상의 학교가 統制機構를 설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

〈表 18〉 수시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횟수를 밝혀 주십시오.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5 회 미 만	3	100	2	100			5	71	6	100	5	100	5	100	16	100	21	91	
5 ~ 10 회					2	100	2	29									2	9	
그 이 상																			
計	3		2		2		7		6		5		5		16		23		

〈表 19〉 內部監査가 채택된다면 그 효과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효과가 많다고 생각한다	8	80	11	84	15	88	34	84	13	81	12	100	11	79	36	86	70	86	
(2) 효과가 없다	2	20	1	8			3	8	1	6			2	14	3	7	6	7	
(3) 모르겠다			1	8	2	12	3	8	2	13			1	7	3	7	6	7	
計	10		13		17		40		16		12		14		42		82		

〈表 20〉 現在監査機構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法人에 속한다	9	100	13	100	17	94	39	97	15	94	12	100	14	100	41	98	80	98	
(2) 學校에 속한다					1	6	1	3	1	6					1	2	2	2	
計	9		13		18		40		16		12		14		42		82		

〈表 21〉 또 그 費用(人件費)은?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校費에서 支給된다.	2	40	3	30	6	43	11	38	3	37	2	25	6	55	11	41	22	39	
(2) 다른데서 支給된다.	3	60	7	70	8	57	18	62	5	63	6	75	5	45	16	59	34	61	
計	5		10		14		29		8		8		11		27		56		

타나고 있다. (<表 22> 참조)

公認會計士에 의한 外部監査는 82%에 달하는 학교가 監査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3> 참조)

그러나 外部監事를 경험한 학교들 중에 71%가 그 效果가 많았다고 회답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회답한 학교의 숫자 자체가 작아 그 比率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기할 만한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表 24> 참조)

外部監査를 받은 경우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는 總學長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며 지

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므로 外部監査를 실시하여 재량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 私學의 自律性을 인정하고 적발검사보다 지도 검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經費負擔은 물론 사무집행에 있어서도 監査받는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한다,

- 동일한 안건도 監査人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 監査人이 원칙만을 내세워 실무자들과 대화가 잘 안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지적은 外部監査의 目的이 監査對象機關의 會計處理의 적정성을 인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不正摘發監査를 하는

<表 22> 기획관리실과 같은 統制管理機構의 설치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하고 있다.	3	50	5	45	3	17	11	31	7	47	5	42	5	38	17	43	28	37	
(2) 하고 있지 않다.	3	50	6	54	15	83	24	69	8	53	7	58	8	62	23	57	47	63	
計	6		11		18		35		15		12		13		40		75		

<表 23> 公認會計士로부터 外部監査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예	2	18	3	23	4	24	9	22	1	6	3	25	2	14	6	14	15	18	
(2) 아 니 오	9	82	10	77	13	76	32	78	15	94	9	75	12	86	36	86	68	82	
計	11		13		17		41		16		12		14		42		83		

<表 24> 外部監査의 경험이 있다면 그 效果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效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1	33	5	83	4	80	10	71	1	50	2	67	2	100	5	71	15	71	
(2) 效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2	67	1	17	1	20	4	29	1	50	1	33			2	29	6	29	
計	3		6		5		14		2		3		2		7		21		

外部監査를 실시할 경우에 문제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表 25> 校費, 期成會費, 自律的 經費 등을 會計 區分에서 經理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大)	대(中)	대(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區分할 필요가 없다.			5	36	5	29	10	24	9	56	5	38	9	60	23	52	33	38	
(2) 구분할 필요가 없다.	4	36	7	50	8	47	19	45	3	19	4	31	5	33	12	27	31	36	
(3) 부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7	64	2	14	4	24	13	31	4	25	4	31	1	7	9	21	22	26	
計	11		14		17		42		16		13		15		44		86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監査人에 따라 會計處理方法이 다르다는 것은 아직 學校會計에 대한 監査基準이나 會計原則이 적절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本研究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게 된다.

(5) 區分經理

校費, 期成會費, 自律的 經費 등을 區分해서 經理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대답에는 大學 쪽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45%)과 전문대학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회답(52%)이 가장 많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큰 大學에서 부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64%가 회답했다. (<表 25> 참조)

區分할 필요가 部分的으로 있는 경우에 어느 部分을 어느 곳에 統合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회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大學會計를 二分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통합하여 一般會計, 自律的 經費, 실험실습비, 호국단비를 합하여 特別會計로 합이 좋다고 본다. 이 제도에서 免稅되는 교수연구비를 지급하며 기성회비는 稅法으로 보완하고 호국단비는 自治性費用으로서 自律的 經費, 실험실습비와 類似하므로 同一性質의 會計로 통합함이 좋을 것이다.

- 校費와 自律的 經費를 통합하고, 이것과 실험실습비, 기성회비로 3구분 해야 한다.

- 自律的 經費 중 지도비는 기성회비 계정에 통합함이 좋은 듯하다. 또 자율적 經費 중 신

문·방송비의 교직원의 지도비·활동비 수당은 기성회비 계정에 통합함이 좋다.

- 自律的 經費를 교비에 통합한다.

- 自律的 經費, 실험실습비를 교비로 통합한다.

- 교비와 기성회비를 통합하고, 자율적 경비와 호국단비를 통합하여 실험실습비의 3計定이 필요하다.

- 교비, 기성회비 그리고 실습비를 통합하고 자율적 경비는 하나의 계정으로 둔다.

- 교비, 기성회비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기성회비는 세입재원의 특성과 지출인건비상 연구수당 등 세액특혜 등의 사항이 있어 分離會計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이 각각 다른 見解가 百出하고 있는 것은 各學校의 特性에 따라 各會計의 性格을 달리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규정하든가 부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法人會計와 學校會計는 98% 區分獨立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 26> 참조)

그러나 만일 이를 연결해야 한다면 法人會計의 轉入金額의 比率에 따라 決定한다는 쪽에 회답한 14個 학교 중 86%에 해당하는 12개 학교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表 27> 참조)

연결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私學機關會計 운영은 私立學校法에 의거한

<表 26> 法人會計와 學校會計를 區分獨立할 것인가?

	대(大)	중(中)	소(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區分·獨立해야 한다.	9	90	13	100	16	89	38	93	14	87	10	83	12	80	36	84	74	88
(2) 區分·獨立하지 않아도 된다.	1	10			2	11	3	7	2	13	2	17	3	20	7	16	10	12
計	10		13		18		41		16		12		15		43		84	

<表 27> 만일 이를 連結시켜 統合會計를 해야 한다면

	대(大)	중(中)	소(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法人會計의 外形에 따라 決定한다.							1	33	1	33	2	25	2	14
(2) 法人會計의 轉入金額의 比率에 따라  결정한다.		1	5	6	2	2	67	2	67	6	75	12	86	
計		1	5	6	2	3	3	8	14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그 理由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감독과 세무 당국의 수입지출에 관한 원천별 課稅문제가 있으므로 연결 통합은 어렵다. 단 私學機關에 대한 제반 세무제도가 완화되면 가능할 것이다.

· 法人會計中心으로 운영되어 學校會計에 낭비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 업무처리에 비능률적이며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상실로 견제가 불가능해 진다.

· 교비에 산운영의 책임소재가 法人으로 옮겨진다.

· 法人과 學校는 目的이 다름으로 연결해서는 안된다.

· 法人의 財源과 學校의 財源이 달라서 혼합할 경우 시설비(현재 法人에서만 부담)를 사용하는데 혼란이 생긴다.

收益事業과 學校會計를 연결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해서 필요없다가 47%, 기여도가 적으므로 필요없다가 37%로 이 둘을 합하면 84%이며,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회답한 것까지 합하면 9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 28> 참조)

수익사업과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會計의 性格이 全然 다르다.
- 收益事業體는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 收益事業은 損益計算이 필요하나 학교회계는 회계성격상 損益計算을 할 수 없기 때문에 會計上 分析이 어려우며 혼란만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收益事業은 그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으므로 별도 회계로 처리하고, 그 利益金만을 학교에 기부하면 되므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收益事業을 學校會計와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收益事業의 學校會計에 대한 기여도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會計性格上 그대로 연결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구분하여 會計하고, 利益金을 學校會計로 轉出하는 금액만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6) 財務諸表의 作成

貸借對照表와 收支計算은 전체적으로는 60%가 作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나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는 100%가 作成하고 있다고 회답했다. 이에 대하여 규모가 적을수록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회답했다. (<表 29> 참조)

貸借對照表에 基本金이 명시되는 경우는 69%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회답을 자체가 50%도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의의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表 30> 참조)

#### (7) 減價償却과 固定資產 管理

固定資產에 대한 減價償却은 거의 행하지 않

<表 28> 收益事業과 學校會計를 聯結시키는 데 대한 문제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복잡하여 필요없다.	4	44	4	36	5	33	13	37	11	69	5	42	7	54	23	56	36	47	
(2) 收益事業에서 學校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필요없다.	4	44	6	55	5	33	15	43	4	25	6	50	3	23	13	32	28	37	
(3) 利害關係者에게 혼란이 생긴다.	1	12	1	9	2	13	4	11					2	15	2	5	6	8	
(4) 聯結해야 한다.					3	20	3	9	1	6	1	8	1	8	3	7	6	8	
計	9		11		15		35		16		12		13		41		76		

聯結이 되지 않는다면 그 理由를 밝혀 주십시오.

<表 29> 貸借對照表, 收支計算書를 作成하고 있는지?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있다.	9	100	4	31	9	50	22	55	2	13	5	50	3	20	10	25	32	40	
(2) 없다.			9	69	9	50	18	45	13	87	5	50	12	80	30	75	48	60	
計	9		13		18		40		15		10		15		40		80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할 필요가 없다는 회답까지 합하면 75%가 되는데, 단순히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를 굳이 감가상각의 실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감가상각의 실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89%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대로를 고수하는 입장으로 보면 부정적인 반응은 모두 75%가 된다. (〈表 31〉 참조)

固定資産의 管理臺帳은 81%의 학교가 있다고 대답했다. (〈表 32〉 참조)

그런데 管理臺帳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大學보다 전문대학이 더욱높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이유로서는 전문대학이 대학에 비해 비교적 新設되면서 장부체제와 재단관리 체제를 잘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固定資産臺帳의 殘額과 貸借對照表의 固定資

産價額과는 74%가 일치한다고 답했으나, 회답한 학교의 비율 자체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회답하지 않은 학교를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상당수의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表 33〉 참조)

固定資産臺帳價額과 貸借對照表 殘額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資産臺帳의 價額은 정부고시가격을 基準으로 하고 있어서 帳簿價額과의 차이가 난다.

- 各 會計別로 臺帳에 등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學校法人의 財産은 教育용과 수익용으로 區分하고 있어 教育용 기본재산이 대부분인 고정자산관리 대장의 資産價額表示는 아무 의미가 없고, 토지세, 교실수에 의하여 表示되는 것이

〈表 30〉 貸借對照表에 基本金이 明示됩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된다.	6	86	2	67	7	64	15	71	2	40	5	83	5	71	12	67	27	69
(2) 안된다.	1	14	1	33	4	36	6	29	3	60	1	17	2	29	6	33	12	31
합	7		3		11		21		5		6		7		18		39	

〈表 31〉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은?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행하고 있다.	1	11			1	6	2	5	1	8	1	9			2	5	4	5
(2) 행하고 있지 않지만 행할 예정이다.	1	11			4	24	5	13	3	23	4	36	3	21	10	26	15	20
(3) 행하지 않고 있다.	5	56	11	92	11	65	27	71	8	62	4	36	10	71	22	68	49	64
(4) 행할 필요가 없다.	2	22	1	8	1	6	4	11	1	8	2	18	1	7	4	11	8	11
計	9		12		17		38		13		11		14		38		76	

〈表 32〉 固定資産管理臺帳은 있습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예	10	100	9	64	11	65	30	73	13	93	11	100	11	79	35	90	65	81
(2) 아니오			5	36	6	35	11	27	1	7			3	21	4	10	15	19
計	10		14		17		41		14		11		14		39		80	

〈表 33〉 固定資産管理臺帳의 殘額과 貸借對照表의 固定資産價額과 一致합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예	5	71	2	50	4	67	11	65	5	62	8	100	5	83	18	82	29	74
(2) 아니오	2	29	2	50	2	33	6	35	3	38			1	17	4	18	10	26
計	7		4		6		17		8		8		6		22		39	

一致하지 않는 경우는 그 理由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 때문에 收益用 基本財産만이 대차대조표상에 表示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내용중 財産規模가 크거나 種類가 雜多하여 그 價額이 相異하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크게 다행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정 자산의 管理는 企業에서는 매우 복잡한 業務로 취급하고 있으나 固定資産의 處分機會가 . 적은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그 處理가 기업에 비해 쉬운 것 같다. 그러나 歷史가 오래 되었거나 學校規模가 큰 경우에는 固定資産의 管理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8) 固定資産의 評價

기존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의 資産評價方法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76%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대학에서는 59%가 충분하다고 응답을 하여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로 59%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4>참조)

충분하지 못할 경우 그 개선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評價方法을 작성하는 것에 7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 35> 참조)

評價方法에 대한 건의를 한 학교는 2個 학교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資産評價를 하려면 감정액만도 엄청나 업무를 못내는 실정이다. 따라서 私學機關이 독자적으로도 정부고시가격의 2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 (현재는 時價와 정부 고시가격 사이에 약 4,5배의 차이가 난다)

• 기존 사학재무회계규칙의 資産評價方法은 충분하지 못하나 차선의 방법도 없는 것 같다. 문제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표준차의 문제라고 본다.

<表 35>에서의 결론은 私學機關 獨自的으로 評價方法을 작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이유로서는 기업회계와 學校會計의 差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산 재평가시에 감정액과 재평가세도 문제가 된다.

(9) 會計關係規程

會計關係規程을 作成·備置하고 있는 학교는 회답자 전체의 40%정도에 불과하다. (<表 36> 참조)

그리고 作成備置하고 있는 規程의 종류는 주로 私學機關財務會計 規則, 豫算作成指針, 文教

<表 34> 既存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의 資産評價 方法은?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충분하다.	3	33	2	22	3	19	8	24	8	67	3	30	8	80	19	59	27	41	
(2) 충분하지 않다.	6	67	7	78	13	81	26	76	4	33	7	70	2	20	13	41	39	59	
計	9		9		16		34		12		10		10		32		66		

<表 35>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企業會計原則을 따른다.	2	29	3	37	4	33	9	33	2	40	2	22			4	24	13	30	
(2) 私學機關 獨自的으로 評價方法을 作成한다	5	71	5	62	8	67	18	67	3	60	7	78	3	100	13	76	31	70	
計	7		8		12		27		5		9		3		17		44		

<表 36> 會計關係規程을 作成·備置하고 있습니까?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예	4	40	5	42	6	40	15	41	7	47	7	58	4	29	18	44	33	42	
(2) 아 니 오	6	60	7	58	9	60	22	59	8	63	5	42	10	71	23	56	45	58	
計	10		12		15		37		15		12		14		41		78		

作成·備置하고 있다면 어떤 規程을 가지고 있는지 그 種類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法典등을 열거한 것을 볼 때 질문자의 의도가 위에 열거한 규정과 다른 私學機關 獨自의 會計關係規程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므로 실제로 독자적인 會計規程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會計規則案은 과거에 不足하였던 規定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10) 會計關係職員

會計關係職員의 出身學校는 商科大學 또는 經

營大學院의 졸업자가 1,2명 있는 곳이 59%를 차지했다. 그러나 회답하지 않은 학교가 30개 교에 달해서 이를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비율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는 13개 학교만이 1명 혹은 2명이 있다고 회답하고 있어 회계관계 직원의 자질문제가 큰 문제라고 하겠다. (<表 37>, <表 38>, <表 39>, <表 40> 참조)

職員들의 평균근속연한은 과장의 경우 10年 이상만도 64%, 5년 이상은 83%에 달하여, 계장

<表 37> 貴校의 會計關係職員의 出身學校는? (1) 商科大學 또는 經營大學院의 卒業者.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없	다			4	36	5	19	11	69	4	36	1	50	16	55	21	37			
1 ~ 2	명	5	71	8	100	7	64	20	74	5	31	7	64	1	50	13	45	33	59	
3 ~ 4	명	1	14					1	3									1	2	
5명 이 상		1	14					1	3									1	3	
計		7		8		11		27		16		11		2		29		56		

<表 38> (2) 非商科의 大學出身者.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없	다					3	25	3	11	6	38	5	50			11	33	14	23	
1 ~ 2	명	6	67	4	67	9	75	19	70	8	50	3	30	7	100	18	65	37	62	
3 ~ 4	명	2	22	2	33			4	15	1	6	2	20			3	9	7	12	
5명 이 상		1	11					1	4	1	6					1	3	2	3	
計		9		6		12		27		16		10		7		33		60		

<表 39> (3) 商業高等學校 卒業者.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없	다					2	17	2	6	3	19	1	11			4	12	6	9	
1 ~ 2	명	2	22	7	58	8	66	17	52	6	37	7	78	9	100	22	65	39	58	
3 ~ 4	명	2	22	5	42	2	17	9	27	6	37	1	11			7	21	16	24	
5명 이 상		5	56					5	15	1	6					1	3	6	9	
計		9		12		12		33		16		9		9		34		67		

<表 40> (4) 人文 및 其他 高等學校 卒業者.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없	다					3	20	3	11	4	31	1	10			5	16	8	14	
1 ~ 2	명	1	25	7	87	12	80	20	74	6	46	5	50	8	89	19	59	39	66	
3 ~ 4	명	2	50					2	7	1	8	2	20	1	11	4	12	6	10	
5명 이 상		1	25	1	13			2	7	2	15	2	20			4	12	6	10	
計		4		8		15		27		13		10		9		32		59		

의 경우는 10年以上은 40%, 5年以上은 77%에 달한다. 반면에 평직원은 3年以上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규모가 큰 大學일수록 근속연수가 長期化하고 있어 이직율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大學은 근속연수가 짧아 직무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41〉, 〈表 42〉, 〈表 43〉 참조)

會計關係職員의 責任 및 財政保證은 60% 정도가 다른 직원에 비해 무겁게 한다고 대답했다. (〈表 44〉 참조)

(11) 會計報告

會計報告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대한 것과 그 報告內容은 대개 복수로 회답했고, 그 內容이 거의 비슷해서 이에 대한 분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거의 理事長에게 報告한다고 되어 있었다. 內容도 대체로 現金收支와 財務諸表였다.

報告期間은 거의 대부분이 月別로 하고 있었으며 每日, 月別, 年度別로 報告한다는 대답이 상당히 많았다.

會計年度의 마감일자는 모두 2月末이었으며 豫算處理上 마감일은 전체적으로 2月末과 3月末이 각각 39%, 57%로 나타나고 있다. 분류상

〈表 41〉 職員들의 평균근속연한은? 課 長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1 ~ 2 년					4	29	4	11			1	9			1	3	5	7	
3 ~ 4 년	1	10					1	3	3	21			4	29	7	18	8	11	
5 ~ 6 년	1	10	5	42	4	29	10	28			2	18	2	14	4	10	14	19	
10년 이 상	8	80	7	58	6	42	21	58	11	79	8	73	8	57	27	69	48	64	
計	10		12		14		36		14		11		14		39		75		

〈表 42〉 係長 또는 代理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1 ~ 2 년	1	9	1	11	2	20	4	13	1	70			2	25	3	9	7	11	
3 ~ 4 년			2	22	3	30	5	17	1	70	1	11			2	6	7	11	
5 ~ 9 년	6	55	3	33	3	30	12	40	5	33	2	22	4	50	11	34	23	37	
10년 이 상	4	36	3	33	2	20	9	30	8	50	6	67	2	25	16	50	25	40	
計	11		9		10		30		15		9		8		32		62		

〈表 43〉 平 職 員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1 ~ 2 년	4	31	2	18	11	69	17	43	2	13	3	30	6	43	11	28	28	35	
3 ~ 4 년	4	31	6	55	1	6	11	27	6	40	2	20	3	21	11	28	22	28	
5 ~ 9 년	4	31	3	27	2	12	9	23	6	40	5	50	3	21	14	36	23	26	
10년 이 상	1	7			2	12	3	7	1	7			2	14	3	8	6	8	
計	13		11		16		40		15		10		14		39		79		

〈表 44〉 會計關係職員의 責任 및 財政保證은?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1) 다른 職員에 비해서 財政保證이 무겁다.	7	64	8	62	11	61	26	62	7	44	6	55	10	71	23	56	49	59	
(2) 다른 직원과 동일하다.	4	36	5	38	7	39	16	38	9	56	5	45	4	29	18	44	34	41	
計	11		13		18		42		16		11		14		41		83		

2月中에 마감하는 것은 모두 3月末로, 3月中에 마감하는 경우는 모두 3月末로 분류했다. <<表 45> 참조)

이는 學校會計의 特性上 學年末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收益事業을 學校會計에 연결시킨다고 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 歷年制(calender year)에 따라 12月末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本 財務會計制度研究에 대한 意見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술해 달라고 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내용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資算計定과 損益計定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복식부기에 의한 記帳이 불가능하다.

- 私學機關 財務會計規則에 의한 지나친 입찰만을 권장하고 있어 예산집행이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다.

- 私學機關은 당초부터 예산절감을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지나친 형식요건은 오히려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어 학교자율에 일임하면 좋겠다.

- 私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등록금 책정 등 財務會計 운영상의 自律化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 私學財務會計制度를 稅務會計와 관련해서 制定한다.

- 교수직의 연구수당을 기성회비에서 處理하여 면세되게 한다.

- 교수직의 연구비 및 지도비를 校費회계에서도 면세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정했으면 한다.

- 사학기관의 사무직원에게도 교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예산과목은 대분류주의를 취하고 운영상 융통성을 용인해야 한다.

- 기성회징수 한도액을 감독청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실정에서는 기성회비도 校費회계에 통합 운영함이 합리적이다.

- 예를 들어 신학대학, 인문계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등으로 몇개의 학교群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규칙의 改正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3조 2항,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 지출을 위하여 15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은 물가 상승으로 5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본다.

- 전산화에 대비한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회계년도를 1월 1일~12월 3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 잇점으로는

- ① 피고용자들의 보수를 공무원들과 같은 시기인 1월부터 인상해 줄 수가 있고, 1, 2月分을 매년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해소할 수 있다.

- ② 一般行政機關과 일치하므로 업무가 간소화된 다(예를 들면 세무감사시에 會計年度를 조사하기 위해 2年度分을 걸쳐서 보아야 한다.

이의 문제점으로는

신학년도의 수업료를 책정하기 전에 예산을 조기편성해야 하므로 세입의 불확실성 때문에 追更豫算을 전제로 한 예산이 되기 쉽지만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면을 지향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불필요할 것이다.

- 대학의 정원의 영세성으로 인건비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 “계약의 원칙”에 일반 경쟁입찰의 한도액이 너무 낮다.

- 현행 실시되고 있는 예산제도의 예비비 사용 통제에 예비비계정 목적이 애매하다. 교원인건

<表 45> 會計年度の 마감일자? (年度末은 모두 2月末)

예산처리상 마감일	대학(大)		대학(中)		대학(小)		대학합		전문(大)		전문(中)		전문(小)		전문대합		전체합		%
1 월 末					2	11	2	5									2	3	
2 월 末	5	50	1	10	8	44	14	36	6	40	5	42	5	45	16	42	30	39	
3 월 末	5	50	10	90	7	39	22	56	9	60	7	58	6	55	22	58	44	57	
4 월 末					1	6	1	3									1	1	
計	10		11		18		39		15		12		11		38		77		

비전용역제로 당초예산에 충원분까지 계상하여 교원채용부진(유자격자부족)으로 학교 경영에 난점이 있다.

·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제35조, 37조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이행불능이다.

設 問

法人名

校 名

大學校( )

專問大學( )

作成者 所屬

姓名

1. 貴校의 規模는

( )個大學 ( )個學科

(1) 學校費 豫算總額 1978年度 千원  
1978年度 千원

(2) 教授(專任講師以上) 名

職 員 名

學生定員 名

산하研究機關 個機關

附屬病院( )

附屬學校數

專門學校( ), 高等學校( )

中學校( ), 國民學校( )

2.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의 計定科目을 이용하는데 問題點이 있습니까?

(1) 있다( ) (2) 없다( )

이를 개편하는데 건의사항이 있다면?

(1) 計定科目을 통합하여 大分類主義로 하여야 한다. ( )

(2) 計定科目을 細分하여 小分類主義로 하여야 한다. ( )

(3) 경우에 따라 다르다. ( )

(3)에 답하신 경우는 그 理由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學校會計에서 複式簿記制度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1) 이미 시행하고 있다. ( )

(2)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찬성한다. ( )

(3) 반대한다. ( )

반대하는 이유는?

(1) 會計部署人員의 不足( )

(2) 會計部署人員의 資質不足( )

(3) 單式簿記로 충분한 정도인데 複式簿記는 번거롭다. ( )

4. 豫算制度의 施行은?

(1) 現在와 같은 형식적인 豫算制度는 不必要하다.

(2) 豫算制度의 改善이 필요하다.

(3) 現在대로가 좋다.

豫算制度의 改善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改善이 필요한지를 써 주십시오.

5. 會計年度중 追加更正豫算은 몇 回나 편성합니까? ( )回

6. 追加更正豫算의 必要性은 무엇입니까?

(1) 文教部 報告用으로 修正( )

(2) 物價上昇으로 再編成( )

(3) 當期 豫算編成의 잘못( )

(4) 기 타( )

기타의 理由인 경우에는 事由를 써 주십시오.

7. 貴校에서는 文教部에 제출하는 豫算과 實行 豫算書를 作成하고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8. 위 물음에서 實行 豫算書를 作成하고 있다면 그 效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1) 效果가 많다고 생각한다. ( )

(2) 上部의 指示로 하나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 )

(3) 效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 )

(4) 모르겠다. ( )

9. 貴校에서는 豫算 擔當部署에서 會計課의 資金收支를 統合管理하고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10. 貴校에서 채택하고 있는 監査制度는?

(1) 內部監査( )

(2) 外部監査( )

(3) 監査를 하지 않고 行政機關 監査時에 같이 한다. ( )

11. 內部監査者는?

(1) 公認會計士등과 같은 會計專門人( )

(2) 非專門人( )

12. 學校組織內에 常設監査署가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13. 內部監査의 種類는?

- (1) 수시감사( )  
(2) 정기감사( )

수시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횟수를 밝혀 주십시오. ( )회정도

14. 內部監査가 행해진다면 그 効果는?

- (1) 效果가 많다고 생각한다. ( )  
(2) 效果가 없다. ( )  
(3) 모르겠다. ( )

15. 現在監査機構는?

- (1) 法人에 속한다. ( )  
(2) 學校에 속한다. ( )

또 그 費用(人件費)은?

- (1) 校費에서支給된다. ( )  
(2) 다른데서支給된다. ( )

기획관리실과 같은 統制管理機構의 설치는?

- (1) 하고 있다. ( )  
(2) 하고 있지 않다. ( )

16. 公認會計士로부터 外部監査를 받은 經驗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外部監査의 經驗이 있다면 그 效果는?

- (1) 效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 )  
(2) 效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 )

外部監査를 실시할 경우에 문제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17. 校費, 期成會費, 自律的 經費 등을 區分해서 經理할 需要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1) 區分할 需要가 있다. ( )  
(2) 區分할 需要가 없다. ( )  
(3) 부분적으로 통합할 需要가 있다. ( )

區分할 需要가 部分的으로 있는 경우에 어느 부분을 어디에 統合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8. 法人會計와 學校會計를 區分·獨立할 것인지?

- (1) 區分·獨立해야 한다. ( )  
(2) 區分·獨立하지 않아도 된다. ( )

만일 이를 聯結시켜 統合會計를 해야 한다면

- (1) 法人會計의 外形에 따라 決定한다. ( )

(2) 法人會計의 轉入金額의 比率에 따라 결정한다. ( )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그 理由를 설명해 주십시오.

19. 收益事業과 學校會計를 聯結시키는데 대한 問題는?

- (1) 복잡하여 필요없다. ( )  
(2) 收益事業에서 學校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필요없다. ( )  
(3) 利害關係者에게 혼란이 생긴다. ( )  
(4) 聯結해야 한다. ( )

聯結이 되지 않는다면 그 理由를 밝혀 주십시오.

20. 貸借對照表, 收支計算書를 作成하고 있는지?

- (1) 있다. ( ) (2) 없다. ( )

貸借對照表에 基本금이 期示됩니까?

- (1) 된다. ( ) (2) 안된다. ( )

21.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은?

- (1) 행하고 있다. ( )  
(2) 행하고 있지 않지만 행할 예정이다. ( )  
(3) 행하지 않고 있다. ( )  
(4) 행할 需要가 없다. ( )

22. 固定資産管理臺帳은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固定資産管理臺帳의 殘額과 貸借對照表의 固定資産價額과 一致합니까?

- (1) 예( ) (2) 아니오( )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 理由를 설명해 주십시오.

23. 既存 私學機關의 財務會計規則의 資産評價 方法은?

- (1) 充分하다. ( )  
(2) 充分하지 않다. ( )

充分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 (1) 企業會計原則을 따른다. ( )  
(2) 私學機關 獨自的으로 評價方法을 作成한다. ( )

私學機關의 固定資産評價 方法에 대해서 건의하실 말씀은?

24. 會計關係規程을 作成·備置하고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作成·備置하고 있다면 어떤 規程을 가지고 있는지 그 種類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貴校의 會計關係部署의 組織을 그리고, 職員數를 表示하여 주십시오.

\*(擔當業務도 明示하여 주십시오.)

26. 貴校의 會計關係職員의 出身學校는?

(1) 商科大學 또는 經營大學院의 卒業者 ( )名

(2) 非商科大學 出身者( )名

(3) 商業高等學校 卒業者( )名

(4) 人文 및 기타 高等學校 卒業者( )名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한은?

課長( )년

係長 또는 代理( )년

平職員( )년

27. 會計關係職員의 責任 및 財政保證은?

(1) 다른 職員에 비해서 財政保證이 무겁다. ( )

(2) 다른 職員과 동일하다. ( )

28. 會計報告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리고 보고

내용은?

(1) 이사장( ) \_\_\_\_\_

(2) 총 장( ) \_\_\_\_\_

(3) 총장 이외의 部署長( ) \_\_\_\_\_

(예) (1) 이사장(○) 재무제표

(2) 총 장(○) 재무제표

(3) 총장 이외의 部署長(○) 현금수지

會計報告 期間과 그 報告內容은?

(1) 每 日( ) \_\_\_\_\_

(2) 週 別( ) \_\_\_\_\_

(3) 月 別( ) \_\_\_\_\_

(4) 分期別( ) \_\_\_\_\_

(5) 年度別( ) \_\_\_\_\_

29. 會計年度의 마감일자는?

年度末:( )月( )日

豫算期間:( )月( )日

(예) 연도말: 12月 31日

예산 처리상 마감일: 翌年 1月 20日

30. 本 財務會計制度 研究에 대한 意見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술하여 주십시오.